



## 수출신용기관

### ◆ 미수은의 영업권(Charter) 5년 연장을 위한 재인가법 의회 통과

미수은 영업권(Charter)을 5년 연장하는 재인가법(Reauthorization Act)이 2006년 7월 26일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9월 30일 상원에서 의결되었으며, 동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.

미수은 영업권은 2011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며, 이번 재인가법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, 미국 경제의 민감 분야 및 품목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지원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.

중소기업지원은 대상기업 확대와 상품개발 등을 위해 중소기업부(Small Business Division)를 설치하고, 담당 부서장은 부장(Senior Vice President)급 이상으로 중소기업금융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하며, 각 부서마다 중소기업 전담 심사역(staff)을 지정하여 운전자금보증에 대한 승인권한 등을 부여하였다. 또한, 중소기업청(SBA) 등 연방 중소기업 담당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며, 중소기업부장이 의장이 되는 중소기업 위원회(Small Business Committee)를 설치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조정, 중소기

업 담당 정부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.

미수은의 지원이 자국 산업 및 고용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경감하기 위하여 미수은은 동법 발효 후 120일 이내에 미국 경제의 민감 분야 및 품목의 리스트를 지정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<sup>1)</sup>, 미수은 지원프로젝트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수은 이사회의 최종승인 이전에 14일 이상(동 지원으로 영향을 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최장 30일까지) 기획예산처, 국제무역위원회, 상무부, 의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.

이외에도 미수은의 비살상용 방산물자 및 용역 수출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권한을 201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였으며, 타이드 원조(Tied Aid Credit Fund) 지원은 재무부와 협의하고, 재무부가 지원을 반대하면 대통령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명시하였다.<sup>2)</sup>

【김 재 철】

1) 미수은 총재는 매년 민감분야 및 품목 리스트를 검토하여 수정된 리스트를 의회에 제출.

2) 수은해외경제 10월호 p71 참조.